



배포 일시	2023. 3. 21.(화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홍 철(044-201-4990) 사무관 임희엽(044-201-354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노조의 주장은 조종사 증언에만 근거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겨레, 3.21) >

- ◆ “죽었어야 했나?” ... 돌풍에 타워크레인 멈추니 ‘태업’이래요
  - 인천 타워크레인 사고 정부 대응 노조曰 “정부 설명은 현장 상황을 고려 안해” 면허정지 압박에 노동자의 의견 가로막혀, 위험 알리기 주저
  - 당시 현장 돌풍 불어 위험했어도 조종사 “태업 몰릴까봐 거부 못했다”

□ 당해 보도는 조종사의 증언에 따른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며, 구체적인 증빙없이 시공사, 안전관리자 등 공사관계자의 상반된 증언은 반영되지 않은 채로 보도되었습니다.

○ 또한, 당해 보도는 지난 19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(원장 김태곤)에서 발표한 인천시 계양구 타워크레인 충돌사고(3.16.) 중간 조사결과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.

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는 당시 필요 이상의 높은 각도로 붐대가 들어 올려져 조종석과 갱폼 간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것\*을 주요한 사고 원인의 하나로 분석하였습니다.

\* 붐대를 과도하게 올려서 조종석 방향으로 큰 관성력이 발생

○ 또한, 주위에 아파트가 인접한 고층·고밀도의 어려운 공사 여건에도 불구하고, 노조에서 순번에 따라 역량 검증 없이 조종사를 배치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.

○ 실제로 당해 조종사는 이 현장 외에 러핑형 타워크레인 조종 경험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추가로 조종사의 경력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□ 한편,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작업 시작 전 작업에 지장을 줄 만한 바람이 불고 있지 않았으며\*, 사고 시점에도 「산업안전보건규칙」 제37조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(15m/s) 범위 이내\*\*였으며, 풍속계 부저도 울리지 않았다고 조사하였습니다.

\* (작업 전 풍속) 일부 단체의 기자회견문과 달리, 16일 기상청 예보 전문에 따르면 '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은 16일 낮 동안 바람이 4~8m/s로 부는 곳이 있겠다'고 예보

\*\* (사고 시 풍속)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(인천 부평구)에서 사고 당시 1분 평균풍속은 3.2m/s

○ 또한, 현장조사(3.17.) 시 사고 조종사 또한 당일 갯품 작업 시작 전에 갯품 작업을 하기에 적절한 기후라 판단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현장 조사자에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.

□ 한편, 복수의 현장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작업을 중단하고,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갯품을 바닥에 착지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안전하게 내리기 위하여 신호수와 조종사 간 교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.

□ 아울러,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2조에 따라 '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'를 보장하는 것이며,

○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의 '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'은 안전규정을 악용하는 불법·부당한 태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 배치 위반, 작업계획 미공지 등 시공사의 불법·부당행위에 대하여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히 단속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<공동>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홍 철(044-201-4990) 사무관 임희엽(044-201-3542)
담당 부서 <공동>	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본부	담당자	부 장 정성모(070-5050-4614) 부 장 전우영(070-5050-4615)